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변경]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수행기관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사업규모

구분	시군별	공고 금액(단위:원)	비고
1	고양시	180,000,000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2	광주시	300,000,000	
3	군포시	120,000,000	
4	부천시	200,000,000	
5	수원시	72,000,000	
6	안성시	21,000,000	
7	오산시	14,000,000	
8	용인시	420,000,000	
9	의왕시	24,000,000	
10	이천시	396,000,000	
11	평택시	560,000,000	
12	화성시	860,000,000	
13	연천군	120,000,000	
14	안양시	12,000,000	3월 초 접수 예정

- 지원 비율 최대 90%에서 최대 60%로 하향 조정됨
- 사업수행 지역 추가 및 사업량 변경으로 총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VAT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차압계 40	50	30	30	160	40	210
흡착설비	350	차압계 40	50	30	30	160	40	210
원심력집진	260	-	-	30	30	160	40	156
흡수설비	390	pH계 100, 전류계 30	-	30	30	160	40	234
세정집진	290	전류계 30	-	30	30	160	40	174
전기집진	290	전류계 30	-	30	30	160	40	174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복수형 게이트웨이에 대해 30% 범위 내 추가 지급임.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배출구마다 30%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참조

2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22.5.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기타 순으로 우선지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사업 참여 기준 및 시공업체 선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승인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및 취소 대상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부착기한 초과 사업장 지원 제외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진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방지지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지역별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지역별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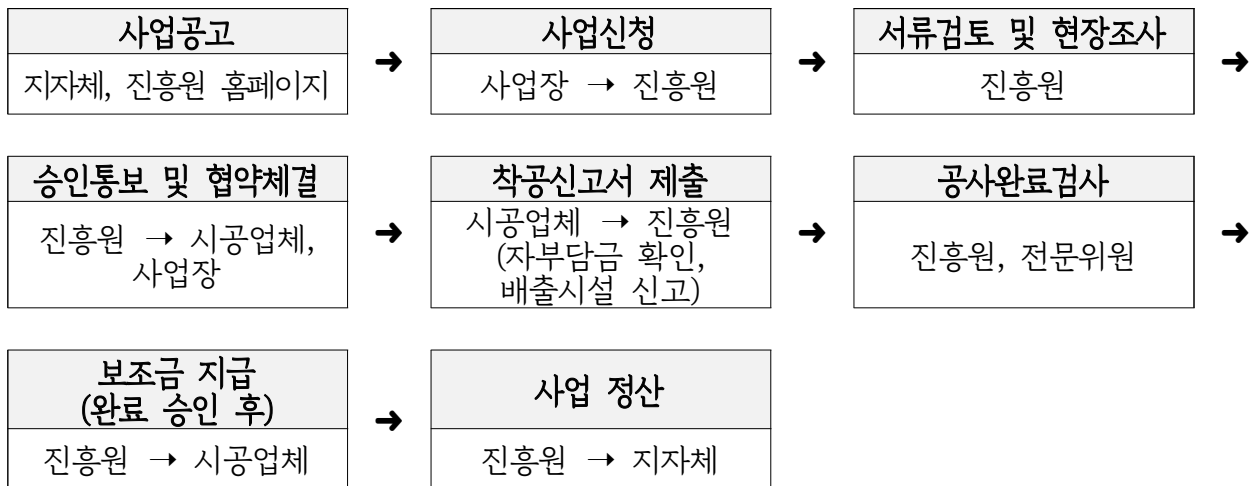
4

신청접수 및 추진절차

□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2. 2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접수기간 : 2026. 2. 2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문 의 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최모란 대리 Tel. 031.985.0485
 - 접수방법: 네이버폼 활용 (접수주소: <https://naver.me/5l2IxeXE>)
 -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음(선정 통보 후 원본제출만 받음)
- 기타사항
 -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시 추가 공고

□ 추진절차



-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내용	이름	내선번호
사업 수행 내용 문의	최모란 대리	031-985-0485

5

지원액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VAT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차압계 40	50	30	30	160	40	210
흡착설비	350	차압계 40	50	30	30	160	40	210
원심력집진	260	-	-	30	30	160	40	156
흡수설비	390	pH계 100, 전류계 30	-	30	30	160	40	234
세정집진	290	전류계 30	-	30	30	160	40	174
전기집진	290	전류계 30	-	30	30	160	40	174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복수형 게이트웨이에 대해 30% 범위 내 추가 지급임.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배출구마다 30%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

※ 준공계 제출 시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를 제출을 통해 전송 가능 여부를 증빙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 *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 ② 측정기기 사양서** (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기 규격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¹⁾	0 ~ 600A1)	0 ~ 500mmH2O2)	-40 ~ 100℃3)	0 ~ 14pH
오차 ²⁾	±5% 이내			
동작온도 ³⁾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 ⁴⁾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⁵⁾) 4 ~ 20mA (표시장치 ⁶⁾)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주요사항

1. 사업수행시 필수 이행 절차

- 구비서류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진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
-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2. 착공 연장에 관한 사유서 제출

-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 불가 시 선정 취소

3. 선급금 지급 불가

4. 2025년 지원사업(본예산) 미완료로 이월된 시공업체 사업참여 불가

5.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단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참여불가

※ 추가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26.1.)』을 참고 바랍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사업장 현황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	반	드	시	작	성
설치대상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 류	단가	수 량	금액	비고	
	차압계(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 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전기집진시설)	300,000				
	전류계(세정펌프)	300,000				
	온도계	500,000				
	전류계(배출시설)	300,000				
	전류계(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단수)	1,600,000				
	IoT게이트웨이(복수)	2,080,000				
	VPN	400,000				
	합 계					
공사금액	총 소요금액	원	지원금	원	자부담	원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 성명)				
	소재지					
	담당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필수 기재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인감도장) 신청인(공사업체 대표자) (인감도장)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2.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4. 사업장 위치도 5. 사업자 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6.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7.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8.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9.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신청기업, 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 각 1부. 10. 보조금 반납 약속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3.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³)*2, 탈사(15m³)*2 (방지) 흡수예의한시설(300m³)*1

설 치 대 상*	내 역(단위:원)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300,000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300,000			
차압계	400,000			
온도계	500,000			
pH계	1,000,000			
IoT 게이트웨이(단수)	1,600,000			
IoT 게이트웨이(복수)	2,080,000			
VPN	400,000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	근거
전류계(배출시설)	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u>없는</u>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예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m³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m³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u>있는</u>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예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m³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m³은 [1.산처리시설 5.6m³]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	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예의한시설 + (2차)흡착예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	예시) (1차)여과예의한시설+(2차)흡착예의한시설로 (1차)여과예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	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	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	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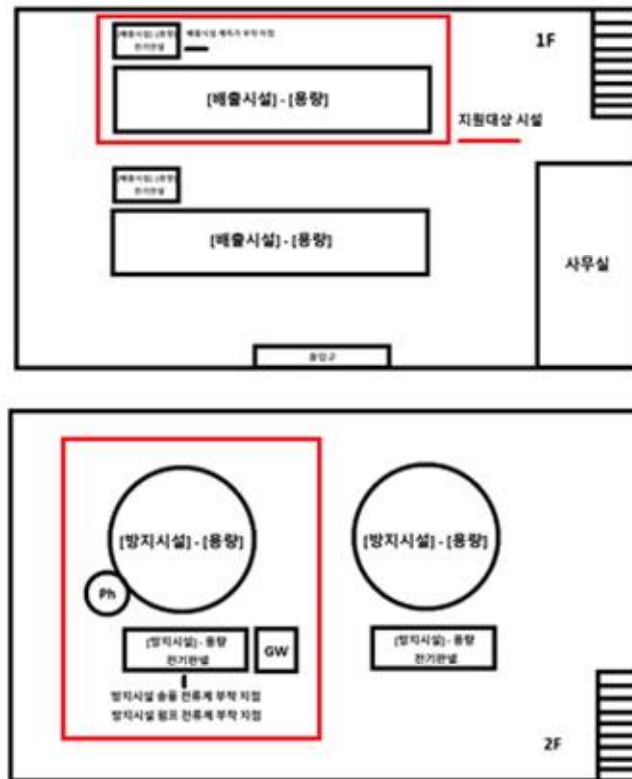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18 참조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 기재

○ 방지시설 ○

			
방지시설명(용량)	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 흡수에의한시설 ○

		
방지시설 pH계(순환조) 설치 위치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외함)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내부)

○ 흡착 / 여과집진시설 ○

		
온도계 설치 위치	차압계 IN 설치 위치	차압계 OUT 설치 위치

○ 배출시설 ○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ex)

[흡수에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 2) 차압계(압력계)
- 3) 온도계
- 4) pH계
- 5) Gateway
- 6) VPN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구비서류 2】

1.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방z시설별 IoT 공사 설치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단위 : 원, VAT제외)

총 공사금액 (①+②)	공사금액 ①	공사금액 ②	비고
			(단위 : 원, VAT 제외)

[예시] 공사금액①= A 방z시설 IoT 금액

공사금액①= B 방z시설 IoT 금액

1) 000방z시설(A) 사물인터넷(IoT) 설치내역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 공 사 원 가	차 압 계 (압 력 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 H 계 (흡 수 · 세 정 시 설)	1,000,000			
	전 류 계 (전 기 집 진 시 설)	300,000			
	전 류 계 (세 정 펌 프)	300,000			
	온 도 계	500,000			
	전 배 출 류 시 계 설	300,000			
	전 방 지 류 시 계 설	300,000			
	I o T 게 이 트 웨 이 (단 수 형)	1,600,000			
	I o T 게 이 트 웨 이 (복 수 형)	2,080,000			
	V P N	400,000			
	합 계				

2) 000방지시설(B) 사물인터넷(IoT) 설치내역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 공 사 원 가	차 압 계 (압 력 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 H 계 (흡 수 · 세 정 시 설)	1,000,000			
	전 류 계 (전 기 집 진 시 설)	300,000			
	전 류 계 (세 정 펌 프)	300,000			
	온 도 계	500,000			
	전 배 출 류 시 계 설	300,000			
	전 방 지 류 시 계 설	300,000			
	I o T 게 이 트 웨 이 (단 수 형)	1,600,000			
	I o T 게 이 트 웨 이 (복 수 형)	2,080,000			
	V P N	400,000			
	합 계				

- ※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 다만, IoT 게이트웨이, VPN 등은 중복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기기는 1개의 설치비만 지원(측정기
기 개수가 많아 게이트웨이 접속 포트를 초과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추가 설치 비용 지원)

【구비서류 4】

사업장 위치도			
업체명		대표자명	
본사연락처	☎	팩스	
사업장주소			
사업장연락처	☎	팩스	
담당자연락처	☎	핸드폰	
<약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카카오맵 지도 활용)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IoT)」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환경전문공사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구비서류 9】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수 임 자 : (인감도장)

위 임 자 :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중

보조금 반납 협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 ○ (인)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물인터넷(IoT)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